입양활성화 지원

1 기본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입양 관련 기관 공동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- 입양의 날 행사 - 입양 관련 기관 공동연수 실시 - 교육(입양부모교육, 업무 담당자) 실시		
사업비	12,000천원 (국비)	[시비]12,000천원	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(기타)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서서기조거케시	아동복지센터	김민주	서향미	최수미
여성가족정책실	이 아동국자센터	02-2040-4201	02-2040-4230	02-2040-4232

[※]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2예산액 (A)	2023예산액 (B)	증감 (B-A)	(D. A)*100/A
				(B-A)*100/A
계	(x-)	(x ⁻)	(x ⁻)	(x-)
	14,700	12,000	△2,700	△18
행사운영비	(x-)	(x-)	(x-)	(x-)
	9,700	10,000	300	3
행사실비지원금	(_X -)	(x-)	(x-)	(x-)
	5,000	2,000	△3,000	△6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	2023년 예산내역		
행사운영비	○ 입양의 날 등 행사 지원 10,000,000원		=	10,000천원
행사실비지원금	○ 행사실비지원금 2,000,000원		=	2,000천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입양 관련 행사를 통해 입양에 대한 건전한 인식 전파 및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
 - 입양가족과 아동양육시설, 입양 기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입양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전파
 - -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및 기관 간의 소통을 장려

□ 사업근거

-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(국가등의 책무)
- 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 및 입양특례법 제5조(입양의 날)
-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계획_행정1부시장 방침 제186호(2015.5.6.)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연중
- 지원대상 : 입양을 원하는 양친 및 입양대상 아동, 민간입양기관 및 양육시설,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
- 사업수행주체 : 서울시아동복지센터
- 추진방법 : 기념행사 및 교육 실시
- 사업의 주요내용 :
 - 입양의 날 행사
 - 입양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공동연수
 - 교육 실시(입양부모, 입양담당자 등)

□ 추진경위

○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계획_행정1부시장 방침 제186(2015.5.6.)을 시작으로 국내입양활성화 사업 시작

□ 2023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2,000	
5월	2023.05~2023.05	10,000	입양의 날 행사
10월	2023.09~2023.11	2,000	입양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수 및 교육

(단위 : 천원)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9년도	○ 입양의 날 행사 1회 ○ 입양활성화를 위한 공동연수 1회 ○ 예비입양부모 교육 2회	
2020년도	○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실시	
2021년도	○ 입양활성화를 위한 공동연수 1회 ○ 부모교육 4회	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입양의날 행사 및 홍보를 통한 입양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전파
- 입양 관련 기관간의 정보 공유 및 기관간의 소통 장려를 통한 입양문화 활성화에 기여